

코로나19 시설운영보조금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의안 번호	제 486-7 호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상정이유

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지침 준수에 적극 동참한 어르신복지시설을 지원하여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예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근거

- 1)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(비용의 보조)
- 2)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(지원내용)

나. 예비비 사용 이유

- 1)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설 운영의 어려움은 시설 운영자뿐만 아니라, 이용자·입소자의 피해 발생
- 2) 장기요양기관은 현재까지 재난안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 손실액 누적
- 3) 추경 예산편성(구비)으로 코로나 피해 관련 지원대상의 사각지대 최소화

다. 사업 개요

- 1) 사 업 명: 코로나19 시설운영 보조금 지원
- 2) 사업기간: 2022. 1.
- 3) 교부금액: 금22,500 천원
- 4) 예비비(구비) 편성액: 금 22,500천원

5) 사업내용: 코로나 관련 시설운영 보조금 지원

지급 대상	지원개소	지급액	소계	합계
노인요양시설	1	1,000천원	1,000천원	22,500천원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	15	500천원	7,500천원	
주야간보호시설	14	1,000천원	14,000천원	

3. 추진경과

가. 코로나 19 시설운영보조금 지원 계획: 2022. 1. 26.

나. 코로나 19 시설운영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: 2022. 1. 26. ~ 1. 27.

다. 예비비 배정(기획예산과): 2022. 1. 28.

1) 금 22,5000 천원 배정

라. 코로나 19 시설운영보조금 교부: 2022. 1. 28.

마. 코로나 19 시설운영보조금 지급 완료: 2022. 1. 28.